

바지락

 **전국금속노동조합**

누구나 금속노조 -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으로는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2025년보다 시간당 290원(약 2.9%) 오른 것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우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Q.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관찮을까요?

A. 아니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수습 기간을 4개월로 정한 뒤 4개월 내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요?

A. 처음 3개월은 가능하지만,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 한 가지, 직원이 모두 함께 사는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노동자, 선원과 선박 소유주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습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체불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퇴직한 사람의 체불임금에만 적용되던 연 20%



의 지연이자가, 이제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때도 적용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방식입니다. 원래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미 두 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이제는 손해를 입은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한 경우, 또는 체불 금액이 3개월 치 임금을 넘을 때는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회사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원청 회사가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더 이상 쉽게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원청 회사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의 조건을 정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원청 회사도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변화들은 결국 일하는 우리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바뀌는 노동법 꼭 체크하고 내 권리도 챙기시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노동상담, 노조가입상담은

1811-9509

5월 1일, 이제는 '노동절'입니다. 이름을 되찾은 일하는 사람의 날



여러분, 2026년부터 5월 1일의 이름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익숙하게 불리왔던 '근로자의 날'이 2026년부터 공식적으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2025년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2026년 5월 1일부터 법에 적힌 명칭도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아니 노동절은 어떤 날일까요?

노동절은 19세기 말,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고 살자”는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섰고,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5월 1일은 '노동절'로 기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노동절은 단순한 기념일이라기보다,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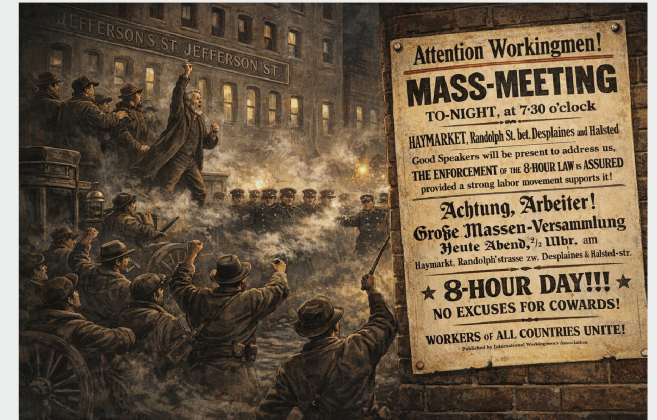
'근로자', '노동자'라는 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게 쓰이지만,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알고 보면 그 근본적인 의미도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는 사전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에 가까운 말입니다. 반면 '노동자'는 몸을 움직여 노동하는 사람,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어떤 단

어를 쓰느냐에 따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5월 1일은, 처음에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날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1923년부터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사용



8시간 노동을 위해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1886년의 헤이마켓 투쟁

되었고, 이후 1963년 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동'이라는 표현 대신 '근로'라는 말을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일하는 사람을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단어 하나의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다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것은, 단지 명칭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1일이 다가오면, “아, 오늘은 노동절이구나” 하고 한 번쯤 떠올려 보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날, 바로 노동절입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모임시다
'모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금속노조가 함께합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 1811-9509

누구나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Q 전북지부 일강지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심승보 지회장입니다. 일강지회는 김제 백산면에 있는 지평선 산업단지 내 대승그룹 계열사 일강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자동차 부품 변속기CASE&HSG, 차체 주조, 가공을 통해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성우하이텍 등에 납품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Q 최근에 일강 지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A 노동조합 가입 이전에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주, 야간 맞교대 근무 중이며 52시간을 넘어 주 70시간까지 워라벨 없이 일을 해왔고, 연차는 매년 반려당했습니다. 나름 김제에서 알아주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많았으나, 입사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일터를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사측과 대립했습니다. 기존에 회사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 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측은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통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Q 일강지회를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첫 번째로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잔업과 특근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것들만 바뀐 것뿐인데 퇴사율이 현저히 떨어진 게 눈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안전한 직장에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측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분기별로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며 일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Q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A 나서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터에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불이익받지 않을지, 기존의 사측의 편에서 있는 노동조합과 대립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동조합 문턱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일강지회 역시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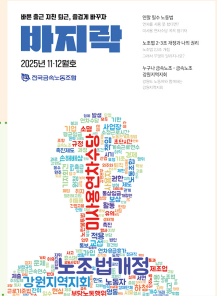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라면? QR

노조없는 노동자를 위한 꿀팁이 가득
금속노조 최신소식은? 금속노조 블로그에서!

2026년 최저임금 계산해 보아요!

1.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 기본 계산 기준

일급(8시간)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 ▶ 한 달을 209시간(소정근로 40시간 × 4.345주 +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 입니다.

2. 급여명세서, 이것만은 확인해 보아요

- ▶ 시급 - 10,320원 이상인가요?
- ▶ 근무시간 - 실제 일한 시간과 맞나요? (연장·추가근무가 빠지지 않았는지)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포함되어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 · 가입 문의  1811-9509